
「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」 공고

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「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12.19.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1. 사업목적

-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·오염물질 저감, 에너지·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·구축 지원

2. 지원대상 및 규모

- (지원대상)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·중견기업
- (지원내용)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관리 설비개선 · 설치, 컨설팅 비용 지원
- (지원분야) ①온실가스 저감, ②대기오염 저감, ③수질오염 저감, ④폐기물배출 저감, ⑤자원순환, ⑥환경보건, ⑦기타 시설

[덧붙임1 참조]

- ※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
 - 지원분야 중 ①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 2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
- ※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
 - 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

- (지원기간) 협약일 ~ 2026.11.30.
-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(75개사 내외 선정)
 - ※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< 총사업비 구성 비율 >

신청기업 유형	국고보조금	민간부담금
중소기업	60% 이하	40% 이상
중견기업	50% 이하	50% 이상

3. 공고 및 접수 일정

- (공고기간) 2025.12.19.(금) ~ 2026.02.06.(금) 까지
- (접수기간) 2026.01.12.(월) ~ 2026.02.06.(금) 18:00까지
 - ※ 접수는 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,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인정

4. 신청방법

- (신청방법) 사업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입력·제출



※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참조([e나라도움소개](#)→[사용자매뉴얼](#))

[e나라도움시스템 사업신청 절차]

-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[로그인] ⇒ ② [사업수행관리] ⇒
- ③ [신청관리] ⇒ ④ [사업신청관리] ⇒ ⑤ 공모현황 ⇒
- ⑥ **공모명 선택(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)** 후 [신청서 작성] 클릭
⇒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(사업신청서 등) 파일 첨부 ⇒ [신청서제출] 클릭

- 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서류 1식 [덧붙임2 참조]
 - ※ 한국환경공단 또는 e나라도움의 사업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의 임의변경 시 탈락처리
- (참고사항) 제출서류 작성 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(www.keco.or.kr)에서 사업계획서 샘플 및 우수사례, 자주하는 질문/답변 참조
 - ※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접속 후, 국민참여→동반성장→중소·중견기업 지원사업 선택
☞ <https://www.keco.or.kr/web/lay1/S1T264C265/contents.do>

5. 지원자격

-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
- 관리지침 제10조(신청자격의 제한)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(공고일 기준)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[참여제한 기준]

-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
- 부도 또는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휴·폐업 중인 경우
-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
-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
-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% 이상인 경우

$$\text{자본잠식률}(\%) = [(자본금 - 자기자본) / 자본금] \times 100$$

-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
-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체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사업공고일 기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
- 사업공고일 기준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
- 사업공고일 기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공고일 이전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
-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된 경우(해당 과제에 한함)
-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인 경우

6. 유의사항

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관리지침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.

- (견적서 제출) 비목 중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본 견적서 1개, 비교견적서 2개 이상을 제출하되,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(인증서, 시험성적서 등) 제출
- (사전 계약발주 및 체결 불가) 협약 체결 이전에 계약 발주 또는 설비제조업체(또는 시공업체)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선정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보조금 환수
- (원가계산서 제출) 서면평가 통과기업은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서 지정한 기간 내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필수
 - ※ 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
- (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) 협약 체결 시, 협약기간에 가산기간(3개월)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 - ※ 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
- (계약 체결 규정 준수) 「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(중요재산 등록) 지원기업은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준공 및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
- (설비 처분제한)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중 성과물을 양도, 대여,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보조금법」 제35조를 준용하여 적용
- (사후관리) 협약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로부터 5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

- (컨설팅 기관)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·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(다만, 컨설팅 비용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 기준 최대 2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 가능)
 -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원기업의 컨설팅기관 지정·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, 시설의 설치·구축 등의 안전성·신뢰성, 기대효과 미흡,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·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과 무관하며, 정부 및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은 민·형사상의 책임이 없음
- (인·허가 사항)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·허가사항(개발제한구역, 그린벨트, 불법건축물 등)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(소음발생, 조망권 침해 등) 등 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(단, 민원은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에 한함)
- (기타) 임대공장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포함한 임대기간이 명시된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
- (사업관리)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, 지원기업은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, 지침 미숙지 및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7. 추진절차

절차	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	신청기업
사업 공고 및 신청·접수(~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 공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신청서 제출
지원과제 선정(3~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전검토 서면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현장확인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종선정평가 참석 (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에 의한 발표) 현장확인 응대
협약체결 및 사업수행(5월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약체결 보조금 선금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종 서류보완 협약체결 서류 제출
진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간보고서 검토 진도관리 및 잔금 지급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간보고서 제출(의월 10일 기한) 진도관리 수검
사업완료 (~ 1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행상황 모니터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운전 및 사업성과 증빙자료 준비 사업결과보고서 작성
보고서 제출 (~ 1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
결과평가 및 정산 (~'27년 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과평가위원회 참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
사후관리 ('27년 2월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후관리(5년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효과보고서 제출

※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8. 선정 및 평가

< 지원 대상 선정 절차 >

공고·접수	사전검토	서면평가	원가계산	현장조사	선정평가
신청서 제출	자격요건 검토	서류평가 (60점 미만 탈락) 평가위원회	사업비 사용계획 검토	지원기업 현장확인	발표평가 (60점 미만 탈락) 평가위원회
신청기업	공단		지원기업	공단	

- (사전검토) 참여제한(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, 휴·폐업 기업 등)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
- (서면평가)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, 사업 적정성 등 서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※ 서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 계획 물량의 1.5배수 범위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
- (원가계산)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선정평가 이전까지 제출
 - ※ 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
- (현장조사) 서면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평가 대상 기업 현장조사 실시
- (선정평가)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,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※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 임직원 1인 배석 가능

<서면 및 선정평가 평가항목>

구분	평가항목	비고
서면평가 (1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목적 부합성(부합성, 달성도, 적용범위 다양성 여부) ▪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(목표 적절성, 재무현황) ▪ 사업예산 합리성(예산 적정성, 사업비 편성 타당성) ▪ 효과성(환경 · 사회적 기대효과, 온실가스저감 효과) 	40점 25점 15점 20점
선정평가 (2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(사업계획 구체성, 실효성, 사업비 산정 적정성) ▪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(수행체계 적절성, 이해도, 사업효과성 등) ▪ 시설 유지관리(유지관리 편의성, 시설 안전성) ▪ 기대 효과(확산성) 	30점 40점 20점 10점

※ 서면평가종합점수 = 서면평가점수 + 가·감점 [덧붙임3 참조]

※ 최종종합평가점수 = (서면평가종합점수 × 0.3) + (선정평가점수 × 0.7) [덧붙임3 참조]

*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를 고려해 “지원기업”과 “후보기업” 분류

9. 협약체결

- 최종 선정 후, 사업계획서 및 협약체결 관련 서류가 구비 완료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협약 진행
 -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사업내용(원가계산서 및 평가위원 의견 등)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
-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지원기업은 지원기업 확정일 이후에 개설된 신규개설 통장 사본,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,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
 - ※ 협약기간에 가산기간(3개월)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험료 기업 자부담) 필요, 제출기한 내 협약체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
-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와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

10. 진도관리

-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은 지원기업 진도관리(월간보고 및 현장방문 등)를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
 - ※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잔금(30%) 차등 지급

11. 결과보고 및 평가

- (결과보고)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포함한 관리지침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

- (결과평가)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은 사업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
 - 결과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“성공”, 60점 미만 “실패”로 분류
 - ※ “실패” 판정된 기업과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 및 국고보조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

12. 사업비 지급, 계상, 관리 및 사용

- (지급) 국고보조금 70%를 선금으로 지급하고,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 수행의 유지 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%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
- (계상 · 관리 · 사용) 관리지침 [별표 2]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 ·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 [덧붙임4 참조]
- (정산) 검증기관(회계법인)의 검증이 완료된 정산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
 - ※ 국고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지원기업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,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인 지원 기업은 위의 감사인과 별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(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) 지원기업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

13. 성과활용

- (보조사업실적보고서)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

- (사후관리) 협약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로부터 5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
 - 사업효과보고서는 사후관리수행 다음연도의 3월말까지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하여야 하며, 수행책임자 변경 및 설치 설비의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게 보고하여야 함
- (성과활용) 지원기업의 성과물은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본 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선정, 선도모델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음

14. 문의처

- (전담기관) 한국환경공단 K-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
☎ 032-590-4808, 4804
- (e나라도움) 회원가입, 사업신청,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
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고객센터 ☎ 1670-9595
- (조달청) 기업등록,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
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고객센터 ☎ 1588-0800

1. 지원내용

지원분야	시설분야	지원 대상
온실가스 저감 (필수)	연·원료 전환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일러, 건조설비, 버너, 로 등 ○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크스, 납사 등 대체재 생산 또는 적용설비 등
	신재생에너지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생에너지 발전설비(ESS 포함) 등 ※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에 한하며, 총사업비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 ○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폐플라스틱 등의 열분해에 의한 연료화 설비 등
	에너지 회수·절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활용 열, 폐열 폐압, 차압 또는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폐열보일러, 폐가스 공급시설, 스팀화수시설, 열교환기, 스팀터빈발전, 차압구동 장치 등 ○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버터적용 시설, 콤프레샤, 펌프, 보일러, 냉동기, 교반기, 변압기 등
	탄소포집·저장·활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탄소 포집공정 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흡수탑, 건식·습식 유동층, 분리막 설비 등 ○ 탄소 저장을 위한 설비 등 ○ 탄소 활용을 위한 설비 등
	건축물에너지 절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무실 내 냉·난방시설을 제외한 지붕 및 벽면의 단열, 단열창호, LED 조명 등 ○ 기타 건물의 에너지 절감하기 위한 시설
	오염방지시설 에너지절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염방지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버터 장착 블로워, 고효율 스크러버 등

지원분야	시설분야	지원 대상
대기오염 저감	대기오염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진장치, 흡착시설, 먼지제거장치 등
수질오염 저감	수질오염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·폐수를 정화·재이용하는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·폐수처리시설, 재순환시설, 집수장치, 포기장치, 여과장비, 유수분리기, 펌프류 등 ○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약품(유해물질 포함)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약품자동조절장치 등
	비점오염 저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수성 포장, 침투도량/저류지, 나무화분 여과장치 등 ○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생형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생수로, 식생체류지 등
폐기물 배출저감	폐기물 저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기물 발생을 절감하는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탈수시설, 불량제품 생산절감시설 등
	유해원료 사용절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해성 원료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료 투입량 조절장치, 저장탱크 등
자원순환	빗물의 재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 내에 유입되는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수저장조, 여과시설, 펌프시설 등
	폐기물 재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별기, 파쇄기, 정제시설, 유기용제 회수시설 등 ○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료를 이용하는 건축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활용벽돌, 재활용석고, 재활용유리 등

지원분야	시설분야	지원 대상
환경보건	악취 저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집장치, 배기장치, 세정장치, 흡착장치 등 ○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내 환기 또는 공조설비 개선시설,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어설비 등
	소음·진동 저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음·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음기, 방음벽, 흡음·차음 판넬 등
	환경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 내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넘어짐·추락 방지설비, 끼임방지 덮개, 가스감지기, 긴급샤워시설 등 <p>※ 총사업비 기준 5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</p>
기타 시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타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녹지조성 및 수목 식재 등 공정 중 발생 폐기물 저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설비 제외 <p>※ 총사업비 기준 5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</p>

- ※ 지원분야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이상 선택하여야 함
- ※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(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)
- ※ 지원범위는 설치비용에 한하여, 전력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 운영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- ※ 시설은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, 제시된 예시 외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
- ※ 지원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의 운영현황(측정자료 등)을 전산으로 전송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기업 내 구축하여야 함.

2. 사업비 구성 비율

지원기업	사업비 구성	비율(%)
중소기업	국고보조금	총사업비의 60% 이하
	민간부담금	총사업비의 40% 이상
중견기업	국고보조금	총사업비의 50% 이하
	민간부담금	총사업비의 50% 이상

비 고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,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※ 국고보조금 비율의 상한 기준 적용 시 반올림을 하지 않는다.

덧붙임 2

신청 관련 제출서류

구분	연번	첨부서류	비고
작성 서류	1	필수 [별지1] 사업 신청서 작성양식	
	2	필수 사업계획서	
	3	필수 [별첨1]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	
	4	필수 [별첨2] 중복지원 금지 확인서	
	5	필수 [별첨3] 신청기업 자기진단서	
	6	필수 [별첨4] 안전보건 서약서 및 안전보건계획서	※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시 신청기업 자체 양식 사용
	7	필수 [별지12]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
구비 서류	8	필수 사업자등록증	
	9	필수 법인등기부등본	
	10	필수 법인인감증명서	※ 개인사업자일 경우,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
	11	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	
	12	필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	※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
	13	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	
	14	필수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조업 증빙 서류	※ 공장등록증명서는 실제 설비가 설치 및 운영될 예정인 공장기준의 공장 등록증명서를 제출 ※ 임대공장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포함된 임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포함
	15	해당시 가점 현황 증빙 사본	
	16	필수 시설의 주요구성 자료(개략도 등)	※ 레이아웃, 공정도, 개략도 등 모든 설비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
	17	필수 시설의 사양파악 자료	
	18	필수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	※ 유형자산 및 건설비는 건당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본 견적서 1개, 비교견적서 2개 제출 필요 ※ 환경전문공사, 재생에너지발전설비 등 각각 시공관련면허(환경전문 공사업등록증, 전기공사업등록증)가 필요한 공사인 경우 관련 면허 또는 등록을 보유한자가 발급한 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업등록증첨부
	19	필수 환경법적기준 (배출허용기준) 준수 증빙서류	※ 최근 6개월 이내 지도점검 결과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
	20	필수 기업신용평가등급표	※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평가사 또는 신용조회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서류

덧붙임 3 평가 및 가·감점 기준

1. 서면평가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방법
사업목적 부합성 (40)	사업목적 부합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시된 과제의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. - 구축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기업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 할 필요성이 높은지 평가한다.
	사업목적 달성도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에서 설정한 목표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한다.
	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 (분야)를 적용하여 친환경·저탄소로의 녹색 전환(온실가스 저감, 자원순환 등)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.
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(25)	목표·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을 평가한다. -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된 과제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.
	기업의 재무현황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[별표9]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한다.
사업예산 합리성 (15)	사업예산 적정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 계상 시 사업관리지침의 준수 여부와 설비별 사업예산의 편중여부를 평가한다. -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수혜 이력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편중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.
	사업비편성 타당성 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선설비별 사업비의 산출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.
효과성 (20)	환경·사회적 기대효과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효과 및 사회적 기대효과를 평가한다.
	온실가스저감 효과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.

2. 선정평가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방법
사업계획 (30)	사업계획의 구체성 (10)	-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의 세부사양 및 설치장소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.
	사업계획의 실효성 (10)	- 제시된 사업계획이 국내 산업계에 효과를 거둘수 있는 내용인지를 평가한다.
	사업비 산정 적정성 (10)	- 투입하는 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규모가 적정 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.
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(40)	사업수행체계 적절성 (15)	-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, 시스템, 설비 관리 등의 수행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.
	사업의 이해도 (10)	- 신청기업이 본 사업의 추진 목적과 과제의 세부추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을지를 평가한다.
	사업의 효과성 (15)	- 과제의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성과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.
시설의 유지관리 (20)	유지관리 편의성 (10)	- 설비의 개선 후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.
	시설의 안전성 (10)	- 과제 추진 및 설비의 운영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한다.
기대효과 (10)	사업 확산성 (10)	- 타 공장에의 보급 및 확산 가능성을 평가 한다.

※ 최종종합평가점수 = (서면평가의 종합평가점수 × 0.3) + (선정평가점수 × 0.7)

3. 가점 및 감점 기준

○ 가점

항 목	가 점	비 고
① 신청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	3	증빙제출
② [기후에너지환경부] ESG 컨설팅 지원사업*으로 ESG 경영수준을 평가받은 기업(최근 3년 이내) *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	3	증빙제출
③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 및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조례	1	증빙제출
④ 녹색인증 기업(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内) *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60조	1	증빙제출
⑤ 환경영영 우수기업(평가등급 A~AAA) *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(enVinance)	1	증빙제출
⑥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(지정서 지정기간 内) *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의6	1	증빙제출
⑦ 신청한 공장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	1	증빙제출
⑧ [기후에너지환경부] CBAM 대응 컨설팅을 받은 기업(최근 3년 이내) *한국환경공단 지원사업	3	증빙제출

* 가점은 항목별 중복은 가능하나, 항목 내에서 중복은 불가능

* 가점은 중소기업 가점(①항) 3점과 나머지 항목(②항~⑧항)의 합계(최대 5점)로 총 8점까지만 부여

○ 감점

항 목	감점
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구축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(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)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	5점

덧붙임 4

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

구분		사용 용도	계상 및 산정기준
비목	세목		
유형자산	자산취득비	건물 및 공작물, 대규모 기계, 기구 등의 구입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소요 경비를 계상 구입한 장비의 설치 시 소요되는 금액을 내역에 포함
건설비	설계비	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경비에 포함 교통·환경영향평가, 설계보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제외
	시설비	건물, 공작물, 대규모 기계장치,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제작 경비 자재 및 시공에 소요되는 세부 내역 포함
운영비	일반용역비	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(최대 20백만원까지 가능)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 정산관련 검증용역비 (최대 2백만원까지 가능)
	일반수용비	시험분석 수수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소요 경비를 계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인인증시험기관 및 전문 기관 분석 수수료 <p>※ 분석 시약 및 키트, 분석기기 산정 불가</p>

※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,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

※ 미지원 항목 : 부가가치세, 기존시설 철거비, 조달수수료, 보험료, 총사업비 원가계산비용 등